

특별항고 청구취지 변경 신청서

사건번호 2005나84701 [담당재판부 : 서울고법 민사 제 2 부]

원 고 김명호, 서울시 동작구 상도 415 중앙하이츠빌 105동 1504호

피 고 성균관 대학교

위 사건의 특별항고(2006. 6. 2일 제출)에 관한 특별항고 취지를 다음과 같이 변경 신청합니다.

변경 전

“2006. 5.1. 자 방어방법각하신청 기각결정의 항고에 대한, 각하결정을 취소한다.”

라는 결정을 구합니다.

변경 후

1. 2006. 5. 1. 자 방어방법각하신청 기각결정의 항고에 대한, 각하결정을 취소한다.

2. 피고 성균관 대학교의 방어방법을 각하한다.

라는 결정을 구합니다.

2006. 6. 2.



위 특별항고인 김명호

(날인 또는 서명)

(연락처 010- 5590-8913)

서울고등법원 귀중

재항고 청구취지 변경 신청서

사건번호 2005나84701 [담당재판부 : 서울고법 민사 제 2 부]

원 고 김명호, 서울시 동작구 상도 415 중앙하이츠빌 105동 1504호

피 고 성균관 대학교

위 사건의 재항고(2006. 6. 2일 제출)에 관한 재항고 취지를 다음과 같이 변경 신청합니다.

변경 전

“2006. 5.1. 자 방어방법각하신청 기각결정의 항고에 대한, 각하결정을 취소한다.”

라는 결정을 구합니다.

변경 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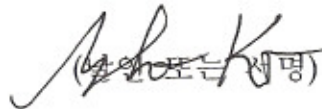
1. 2006. 5. 1. 자 방어방법각하신청 기각결정의 항고에 대한, 각하결정을 취소한다.

2. 피고 성균관 대학교의 방어방법을 각하한다.

라는 결정을 구합니다.

2006. 6. 2.

위 재항고인 김명호



(연락처 010- 5590-8913)



서울고등법원 귀중

재항고



재항고인: 김명호,

서울시 동작구 상도동 415, 중앙하이츠빌 105 동 1504 호
(휴대폰:010-5590-8913)

상대방: 학교법인 성균관 대학, 서울 종로구 명륜동 3가 53 이사장 권이혁

위 당사자간 서울고등법원 2005 나 84701 방어방법각하신청기각의 항고 각 하결정에 대하여 재항고를 제기합니다.

원 결정의 표시

“ 2006. 5. 1. 자 방어방법각하 신청 기각 결정은 항고대상이 아니다.” (5 월 26 일 변론기일에서 서울고법 민사 2부 박홍우 부장판사 구술로 고지)

재항고 취지

“ 2006. 5. 1 자 방어방법각하신청 기각결정의 항고에 대한, 각하 결정을 취소한다.”

라는 결정을 구합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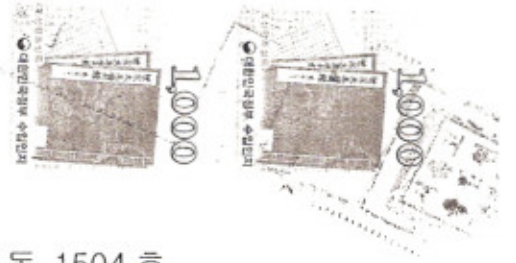
재항고 이유



1. 재항고에 이르게 된 경위

재항고인은 민사소송법 제 149 조(실기한 공격, 방어방법의 각하)에 따라, 상대방의 방어방법에 대한 각하신청을 하였고(입증자료 1), 그의 기각 결정에 대하여 민사소송법 제 439 조(항고의 대상)에 의하여, 항고

특별항고



항고인: 김명호,

서울시 동작구 상도동 415, 중앙하이츠빌 105 동 1504 호
(휴대폰:010-5590-8913)

서울고등법원 2005 나 84701 교수지위확인 사건 관련, 동 법원이 2006 년 5 월 12 일, 방어방법각하 신청 기각결정에 대한 각하하였으나 이에 불복, 민사소송법 제 439 조(항고의 대상)와 제 449 조(특별항고)에 따라 특별항고를 제기합니다.

원 결정의 표시

“ 2006. 5. 1. 자 방어방법각하 신청 기각 결정은 항고대상이 아니다.” (5 월 26 일 변론기일에서 서울고법 민사 2 부 박홍우 부장판사 구술로 고지)

특별항고 취지

“ 2006. 5. 1 자 방어방법각하신청 기각결정의 항고에 대한, 각하 결정을 취소한다.”

라는 결정을 구합니다.

특별항고 이유



1. 특별항고에 이르게 된 경위

특별항고인은 민사소송법 제 149 조(실기한 공격, 방어방법의 각하)에 따라, 상대방의 방어방법에 대한 각하신청을 하였고(입증자료 1), 그의